

**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**  
**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**



**성 북 구 의 회**

#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

## (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)

제안일: 2023. 4. 20.

제안자: 박 영 섭

찬성자: 정 해 숙

#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「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일괄 심사·채택하여 승인을 받고자 함

### 2. 주요골자

- 가. 감사실시시기: 제1차 정례회 기간 중
- 나. 감사기간: 2023. 6. 15. (목) ~ 6. 23. (금) (9일간)
- 다. 감사대상사무: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
- 라. 감사대상기관: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행정기관, 성북구 도시관리공단, 성북문화재단
- 마. 감사방법: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자료 확인 및 현황 보고 청취, 시책질문, 필요시 현장 확인 등

### 3. 관련근거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
- 나.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41조부터 제52조
- 다. 「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

## 【 주요 관련법규 】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49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·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### 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41조(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) ①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.

제44조(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) ① 감사나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해당 지방자치단체
  2.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와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
  3. 법 제135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·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
  4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
  5. 법 제1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·위탁된 사무(지방자치단체에 위임·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)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. 다만,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.
  6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. 다만,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·회계·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.
- ②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면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.

## □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

제2조(감사)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는 서울특별시 성북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(이하 “감사”라 한다)를 행한다.

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.

제9조(감사·조사결과보고) 영 제52조에 따른 보고서에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